

교육과정운영위원회 규정

규정 · 소관 교무처 · 현행 규정

개정 2024. 11. 25. · 시행 2024. 11. 25. (현행 판)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<https://suleap.syu.my/r/83>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1. 오전 2:21:56 · 이후 개정되었을 수 있으니 시행 여부는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삼육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.) 학칙 제36조 제5항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1-04-15>

제2조(구성)

위원회는 교무처장(위원장), 교무부처장(서기), 기획처장, 교양교육원장, 학사지원팀장, 교수(6)로 구성한다. <개정 2013-04-29>

제3조(위원장 등의 직무)

-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그 위원회를 대표한다.
- ② 서기는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13-04-29>

제4조(임명 및 임기)

- ①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13-04-29>
-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다만,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3-04-29>

제5조(기능)

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. <개정 2022-03-07>

1. 교양 및 전공 전반에 대한 교육과정의 운영 및 기타 요구사항을 연구 및 기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
2. 교육과정 개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3.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4. 기타 위와 관련한 제반사항

제5조의2(교육과정 개선)

교육과정 개선 및 교과목 개선(폐지, 신설, 변경)은 다음의 내용에 따른다. <신설 2016-03-01>

- ① 교육과정은 학과별로 수요자 중심 및 경력관리로드맵(CDR)에 기초해서 구축하여 본 위원회의 결의를 받아 운영한다.
- ② 전공 교과목 폐지 및 신설은 학과 회의를 거쳐 본 위원회의 결의를 받아 운영한다.
- ③ 교양 교과목 폐지 및 신설은 교양 교육과정 소위원회의 심의 후 본 위원회의 결의를 받아 운영한다.

제6조(연구위탁 및 의견 청취)

위원회는 교육제도 및 교육과정 개선에 필요한 연구를 위탁할 수 있고, 연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7조(회의)

-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서기는 회의 내용을 기록한다. <개정 2013-04-29>
-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의결한다.

제8조(교양 교육과정운영소위원회)

- ① 교양 교육과정의 편성,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연구와 검토 및 심의를 위해 교양 교육과정운영소위원회를 둔다. <개정 2016-03-01>
-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교양교육원장으로 한다.

- ③ 소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교양교육부원장, 교무부처장, 교목부처장으로 하고, 임명직 위원은 전임교원 중 교양교육원장의 추천으로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로 한다.
-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에 따른 재임 기간으로 한다.
- ⑤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궐위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- ⑥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, 간사는 교양교육원 교학팀장이 맡는다.
- ⑦ 소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. <신설 2016-08-01>

제9조(기타 사항)

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세부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- 1. 본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2. 본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3. 본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4.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5. 본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6. 본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7. 본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8. 본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9. 본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.
- 10.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.
- 11. 본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.
- 12. 본 규정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.
- 13. 본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, 제1조(목적) 또한 소급하여 시행한다.
- 14. 본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.
- 15. 본 규정은 202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.